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54호 2017. 3. 27(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5호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경비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3-298호선 외 4개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30호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5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5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59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사전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22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 ----- 2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1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1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1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35호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07호(2011.8.16.)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349호(2017.1.2.)로 지정(변경)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의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459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53,855	-	53,855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3,855	-	53,855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3,855	-	53,855	100.0	

2) 용도지구(해당사항 없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22	12~23	국지 도로	901.9	대2-32	대2-35	일반 도로		1977.3.31 (인고제73호)	폭원 변경
변경	중로	3	122	12 (12~23)	국지 도로	901.9	대2-32	대2-35	일반 도로		1977.3.31 (인고제73호)	
기정	중로	2	773	15	국지 도로	197	중3-122	소3-101	일반 도로		2011.8.16. (인고제207호)	
기정	중로	3	297	12	국지 도로	76	중3-121	소2-3	일반 도로		2011.8.16. (인고제207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50	중2-773	중3-297	일반 도로		2011.8.16. (인고제207호)	
기정	중로	3	121	15~24 (주요폭원15m)	집산 도로	885	대2-35	중3-122	일반 도로		1996.8.6. (인고제139호)	폭원 변경
변경	중로	3	121	12 (12~21)	집산 도로	810	대2-35	중3-122	일반 도로		1996.8.6. (인고제139호)	
기정	소로	3	17	6~9	국지 도로	187	중3-122	소1-2	일반 도로			대표 폭원 기재
변경	소로	3	17	6 (6~9)	국지 도로	187	중3-122	소1-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	10~15 (주요폭원10m)	국지 도로	181	중3-122	소1-2	일반 도로			대표 폭원 기재
변경	소로	1	3	10 (10~15)	국지 도로	181	중3-122	소1-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117	소1-3	소3-17	일반 도로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3-122	중로3-122	· 구역내 폭원변경 - B=12~20m → 18~20m · 대표폭원 기재 - B=12~23m → 12m(12~23m)	· 가정여중주변 정비계획 해제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구역내 폭원변경
중로3-121	중로3-121	· 구역내 폭원변경 - B=22~24m → 15m · 폭원 및 연장 정정, 대표폭원 기재 - B=15~24m → 12m(12~21m) - L=885m → 810m	· 가정여중주변 정비계획 해제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구역내 폭원변경 · 대표폭원을 12m로 정정하고, 십정경 기장 조성에 따른 폭원(B=21m) 및 연장(L=810m) 결정내용 반영
중로3-17	중로3-17	· 대표폭원 기재 - B=6~9m → 6m(6~9m)	· 대표폭원과 변화폭원 동시 기입
소로1-3	소로1-3	· 대표폭원 기재 - B=10~15m → 10m(10~15m)	· 대표폭원과 변화폭원 동시 기입

2)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노외주차장	서구 가좌동 344번지	423	-	423	2011.8.16. (인고제207호)	조성 후 무상귀속

3)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⑫	한신공원	어린이공원	서구 가좌동 344번지	5,470	증) 666	6,136	1981.9.24. (건고제539호)	조성 후 무상귀속
변경	①	-	어린이공원	서구 가좌동 396번지	1,900	증) 129	2,029	2011.8.16. (인고제207호)	조성 후 무상귀속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⑫	한신공원	·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 면적 : 5,470 → 6,136㎡	· 중로3-122 폭원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휴게·휴식 확보를 위하여 면적추가 확보
①	-	·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 면적 : 1,900 → 2,029㎡	· 지역주민의 휴게·휴식 확보를 위하여 면적추가 확보

4)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서구 가좌동 380, 399번지	1,223	감) 97	1,126	2011.8.16. (인고제207호)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서구 가좌동 305-5번지	79,439	-	79,439		지구의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녹지	·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1,223 → 1,126㎡	· 중로3-121 폭원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변경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라.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3,855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41	-	-	41	-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기정	가좌라이프 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3,855	획지44-1 (공동주택)	36,136	서구 가좌동 381번지 일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50% 이하	85m이하 (평균25층 이하)
			획지44-2 (노유자시설)	1,300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보육시설 (어린이집)	50% 이하	150% 이하	15m이하 (3층이하)
			획지45-2 (주차장)	423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44-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44-2	지정용도	· 영유아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45-2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건축한계선	획지44-1	· 인접대지경계선		폭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내 기존 보행축을 고려하여 8m의 공공보행통로 계획								
용적률완화기준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0.4% + 공공이용시설부지 확보 3.6% + 탑상형아파트 건립 5% + 지하주차장 확보 10% ⇒ 완화적용 용적률 : 289% → 계획 용적률 : 25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300%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획지 44-4, 44-5의 완충녹지 및 획지 44-3, 45-1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변경

결정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	
변경	가좌라이프 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3,855	획지44-1 (공동주택)	35,564	서구 가좌동 381번지 일원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16.49% 이하	274.99% 이하	300% 이하	85m이하
			획지44-2 (노유자시설)	1,300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보육시설 (어린이집)	50% 이하	150% 이하		15m이하 (3층이하)
			획지45-2 (주차장)	423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
건축물 용도	구분		계획내용							
	획지 44-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44-2	지정용도	· 영유아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45-2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 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3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항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44-1		· 인접대지경계선		폭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내 기존 보행축을 고려하여 8m의 공공보행통로 계획									
용적률완화기준	· 완화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6.2% + 공공이용시설부지 확보 3.7% + 지하주차장 확보 10% ⇒ 완화적용 용적률 : 289.9%이하 → 계획용적률 : 274.99%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300%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획지 44-4, 44-5의 완충녹지 및 획지 44-3, 45-1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자연환경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미미 ◦절·성토의 공사는 없으며 주변지역과의 단차가 없도록 계획함 ◦주변도로 기반고를 고려한 계획으로 최대한 옹벽 발생이 없도록 계획유도
	녹지변동 녹지체계	◦녹지율 증가 예상 ◦녹지대 연결 필요	◦녹지면적(공원 및 녹지)의 증가로 녹지율 증가 ◦본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자연요소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대를 고려함에 따라 도심지 녹지활용도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비오뜰	◦비오뜰유형 변화 없음 ◦비오뜰 공간증가 예상	◦사업시행후 사업대상지의 비오뜰 유형은 공동주택지(평가등급 5등급)로 평가제외지역이므로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뜰 유형은 분포하지 않음 ◦녹지면적 확보로 생물서식공간을 창출
생활환경	일조	◦본 건축물에 의한 일조의 영향	◦확실적인 평행배치를 피하고 변화 있는 공간이 되도록 유도
	바람	◦바람길의 확보	◦관상형의 거대건물이 아닌 신선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탑상형으로 건축할 계획
	에너지	◦에너지소비증가예상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절약형 단지조성
	휴식 및 여가공간	◦환경친화적 건전한 공간 조성	◦산책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Green Network체계 구축 ◦보행연결통로를 구성할 수 있는 보행 Network체계 구축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폐기물의 발생, 공사장 소음발생 등 예상	◦폐기물관리법, 건설 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재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전·후 비교시 녹지면적 등의 증가로 불 때 개발전보다 불투수층이 감소하게 되어 개발로 인한 홍수유출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개발전·후 토사유출량의 변화는 대동소이하나, 공사중에는 토공사 등에 따른 토사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최대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중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임시저류지점 침사지를 설치하여 활용 ◦공사중·후에 단지내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확보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연구조 또는 불연 재료 사용 ◦집중호우시 침수발생 피해지역으로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고, 포장재 사용시 투수성이 우수한 자재사용을 적극검토 ◦교통사고 피해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사시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막 설치(북측 가정여중교 주변, 남측 유명아파트 변)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일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인접한 가정여중 측 획지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일조 및 경관상 여건 향상 	
통학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아.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용도)
				획지번호	위치	면적(m ²)	
기정	44-1	44	40,559	1	인천 서구 가좌동 381번지 일원	36,136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4-2			2	인천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1,300	노유자시설(보육시설)
	44-3			3	인천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1,900	어린이공원
	44-4			4	인천 서구 가좌동 380번지 일원	733	완충녹지
	44-5			5	인천 서구 가좌동 399번지 일원	490	완충녹지
	45-1	45	5,893	1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5,470	어린이공원
	45-2			2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423	노외주차장
변경	44-1	44	40,019	1	인천 서구 가좌동 381번지 일원	35,564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4-2			2	인천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1,300	노유자시설(보육시설)
	44-3			3	인천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2,029	어린이공원
	44-4			4	인천 서구 가좌동 380번지 일원	641	완충녹지
	44-5			5	인천 서구 가좌동 399번지 일원	485	완충녹지
	45-1	45	6,559	1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6,136	어린이공원
	45-2			2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423	노외주차장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없음)

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구 분	규 모	비 고	
도 로	7,277㎡	8개노선	
주차장	423㎡	1개소	
공 원	8,165㎡	2개소	건립세대수×3㎡ 이상 또는 부지면적 5% 이상 중 큰 면적
녹 지	1,126㎡	1개소	
상하수도	세대당 0.5ton 이상(609ton) 급수시설 설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5조, 수도법 및 하수법에 적법하게 설치계획	
소방용수시설	29ton 이상 설치	화재안전기준(제4조)에 준용하여 적법하게 설치계획	
비상대피시설	피난안전구역 및 세대내 대피공간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 및 건축법 준용하여 적법하게 설치계획	
가스공급시설	적법하게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및 관계법령 준용하여 적법하게 가스공급시설 계획	

카.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1)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 세대수			계획 세대수			비 고
	계	가옥주	세입자	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재건축 소형주택	
세대수	702	278	424	1,218	1,180	38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가좌주공 2차아파트 구역	주택재건축	75,024.7㎡	21.99%	250%	90m 이하	1,757 세대	사업시행인가	
가좌진주 1차아파트 구역	주택재건축	21,488.5㎡	18%	250%	113m 이하	727 세대	조합설립인가	

파.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해 이주시기 및 철거 등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하.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 없음)

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 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 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시야 확보
 -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 외부공간 및 지하주차장에 CCTV 설치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준수

너.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수목활용 계획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는 80년대 중반 조성된 구도심에 해당하며, 주변지역 역시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았음 ◦본 사업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별필지(연립주택지) 내 일부 조경부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건축물은 3층 이하의 연립 및 빌라지역으로 분포된 수목조사결과 주요수종으로는 은행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플라타너스 등 약 총 693주가 분포함 ◦기타 수목으로는 장미넝쿨, 수수꽃다리, 귀퉁나무, 회양목 등이 있으며 그 식재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사업시행시 조사된 수목의 이식가치 및 생존율 등을 조사·검토하여 대상지내 공원, 완충녹지, 가로수 등에 최대한 활용 할 것 임 ◦활용 가능한 수목의 경우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이식 보존할 계획임 ◦한신공원내 위치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추후 새로이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에 최대한 이식 보존할 계획임

더.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러.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3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3-298호선 외 4개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13호(2017. 2. 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 시설【도로 : 중3-298호선 외 4개노선, 사업명 : 중로3-298호선 외 4개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3.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298호선 외 4개노선)
 - 명칭 : 중3-298호선 외 4개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중로	3	298	12	국지도로	85	중로 1-26	소로 1-47	일반도로	-	2017. 2. 6.	-
도로	중로	3	299	12	국지도로	264	대로 2-32	소로 1-47	일반도로	-	2017. 2. 6.	-
도로	소로	1	47	10	국지도로	371	소로 3-354	대로 2-32	일반도로	-	2017. 2. 6.	도로모퉁이 조정
도로	소로	1	52	10	국지도로	69	중로 3-299	교통광장	일반도로	-	2017. 2. 6.	-
도로	소로	1	53	10	국지도로	79	가좌동556-64 (소로 1-54)	중로 3-299	일반도로	-	2017. 2. 6.	()는 당초 열람 공고위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코스모화학(주) 성 준 경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5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번호	행정 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권리 종류	성명	
1	서구 가좌동	273-3	대지	1,715.3	16.9	유준산업(주)	-	-	
2	"	273-9	도로	3,871.0	2,746.9	인천광역시 서구청	-	-	
3	"	273-23	대지	1,673.0	16.8	유준산업(주)	-	-	
4	"	274-1	"	5,167.2	85.4	"	-	-	
5	"	274-2	"	291.1	28.6	"	-	-	
6	"	274-3	"	597.7	28.7	"	-	-	
7	"	274-4	"	659.2	63.7	"	-	-	
8	"	556-1	공장 용지	1,602.5	18.5	코스모화학(주)	-	-	
9	"	557-1	도로	600.0	600.0	인천광역시 서구청	-	-	
10	"	556-64	공장 용지	6,703	4,739.4	코스모화학(주)	-	-	
합 계				31,130.3	8,344.9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에 비치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중로	3	298	12	국지도로	85	중로 1-26	소로 1-47	일반도로	-	2017. 2. 6.	-
도로	중로	3	299	12	국지도로	264	대로 2-32	소로 1-47	일반도로	-	2017. 2. 6.	-
도로	소로	1	47	10	국지도로	371	소로 3-354	대로 2-32	일반도로	-	2017. 2. 6.	도로모퉁이 조정
도로	소로	1	52	10	국지도로	69	중로 3-299	교통광장	일반도로	-	2017. 2. 6.	-
도로	소로	1	53	10	국지도로	79	가좌동556-64 (소로 1-54)	중로 3-299	일반도로	-	2017. 2. 6.	()는 당초 열람 공고위치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3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3.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보석로12번안길 16외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3. 2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43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 고 기 간 : 2017. 3. 22 ~ 2017. 4. 5 (15일간)

■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28버5831외 12대 (“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4)		

※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불법 운행된 사유	등록일
1	28버5831	NEW 그랜저XG	기타	2017.03.20
2	17모0282	i40	기타	2017.03.20
3	27루5799	다이너스티(DYNASTY)	기타	2017.03.20
4	05다1799	오피러스	기타	2017.03.20
5	14러5507	카니발 II	기타	2017.03.20
6	인천33모3565	렉스텐	기타	2017.03.20
7	49부6964	Q5 3.0 TDI Quattro	기타	2017.03.17
8	인천83다3403	봉고프런티어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7.03.16
9	인천82라2123	코란도-밴	기타	2017.03.09
10	28수3009	BMW 320d	기타	2017.03.06
11	68고3995	체어맨	기타	2017.03.03
12	39더1746	렉스텐	기타	2017.03.02
13	55모9649	Q5 3.0 TDI quattro	기타	2017.02.27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45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5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9호(2017.02.2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54호선, 사업명:소로1-54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6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54호선)

○ 명칭 : 소로1-54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노 선 명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시 점	종 점	비 고
소로1-54호선	10	126	1,380.8	가좌동 556-54 (대로2-32)	교통광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코스모화학(주) 성 준 경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5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번호	행정 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권리 종류	성명	
1	서구 가좌동	556-64	공장 용지	6,703	1,380.8	코스모화학(주)	-	-	
합 계				6,703	1,380.8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에 비치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54	10	국지도로	126	가좌동 556-54 (대로2-32)	교통광장	일반도로	-	2017.2.27	-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459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사전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관리과-9854(2017.03.21.)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출국 후 재입국 기록이 없는 외국인 소유)의 운행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17. 3. 27 ~ 2017. 4. 10 (15일간)

■ 공고내용

1. 행정처분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등록 예고		
2. 대상차량	자동차등록번호	39주4540 (크레도스)	
	소유자	BADAM BAYART****	
3. 운행정지명령등록예정일	2017. 4. 11. 이후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 유의사항

- 위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2017. 4. 10.까지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서구청 교통민원과를 방문하여 운행정지를 요청한 경우 즉시 운행정지명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위 기한까지 운행정지명령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우리 구에서 직권으로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를 명하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1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시”를 “실태조사 시”로, “대부 시”를 “대부 시”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회의결”을 “구 의회 의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연간사용료·납부방법”을 “연간 사용료·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대”를 “전대(轉貸)”로 한다.

제25조 중 “중의사용권”을 “중의 사용권”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중”을 “사용 중”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에 저촉되어”를 “도시계획과 일치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건물 및 부지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32조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할 납부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할 납부
3.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할 납부

제39조 제목 중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을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을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중 “영 제39조제1항”을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하고,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같은 항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한다.

제41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9조 중 “관사라 함은”을 “관사란”으로 “사용에”를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1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하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하 함은 법 제2조제3호”를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로, “영 제2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하 함은”을 “이란”으로, “법 제2조제3항”을 “법 제2조제3호”로, “스티로폼등”을 “스티로폼 등”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중”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하 함은”을 “이란”으로, “냉난방류 등으로 제13조의 규정”을 “냉·난방류 등으로 제13조”로, “폐기물로서”

를 “폐기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공사·작업등”을 “공사·작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등에 의하여”를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른”을 “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에 따라”로, “구청장이 정하는”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으로, “폐기물로서”를 “폐기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으로, “적환장등을 이용 보관하였”을 “적환장 등에 이용·보관하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할구역 안”을 각각 “관할 구역”으로, 같은 항 중 “이적”을 “이적(移積)”로, “설치하게 할”을 “설치하게 할”로,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을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 미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당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간”을 “지방자치단체 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위락지등”을 “위락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량을”을 “양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를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묶은후”를 “묶은 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배출시”를 “배출 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규격봉투외”를 “규격봉투 외”로, “위치등”을 “위치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면”을 “앞면”으로,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처리절차·방법등”을 “처리절차·방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품목별배출요령등”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품목별배출요령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배출자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을 “배출자에게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제9조의2제1항”으로, “날로부터 7일 이내”를 “날부터 7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상시”를 “인상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을 “제작할 때는 봉투 앞면”으로, “의거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이상”을 “따라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으로,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등”을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벌규정등”을 “처벌규정 등”으로, “완료후”를 “완료 후”로, “회수·보관하는등”을 “회수·보관하는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광고등을 게재하여 수익사업등”을 “광고 등을 게재하여 수익사업 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유선신청에 의하되”를 “유선 신청에 따르되”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제1항제3호”로, 같은 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상점등”을 “상점 등”으로, “당해장소”를 “해당 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등”을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으로, “장소로서”를 “장소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를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로, “당해”를 “해당”으로, “1톤이상”을 “1톤 이상”으로, “홍보등”을 “홍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입구로서”를 “출입구로써”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로, “제공등 제13조의 규정”을 “제공 등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천재지변을 당하여”를 “천재지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의 감면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단서 중 “서구로”를 “구로”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의2 본문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17조 중 “법 시행령 제34조의4”를 “영 제38조의4”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등)”을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로, “관리.운영을 위탁할수”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할 수 있는 자는 법 제 2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조, 제13조 관련)

품명	규격	수수료(원)
전기장판	모든규격	6,000
옥돌자석매트(자석요)	모든규격	11,000
장롱	1쪽(4자)1.2m이상	11,000
	1쪽(3자)0.9~1.2m	10,000
	1쪽3자0.9m미만	8,000
책상	양수(양서랍)	7,000
	편수(외서랍, 무서랍)	6,000
	컴퓨터책상	5,000
	상판	3,000
의자	모든규격	4,000
식탁	6인용이상(의자별도)	7,000
	6인용미만(의자별도)	6,000
쇼파	4인용이상	11,000
	3인용	10,000
	2인용	6,000
	1인용	5,000
	테이블	3,000
매트리스 (침대)	2인용	9,000
	1인용	8,000
	유아용침대	3,000
침대틀	2인용(퀵사이즈포함)	4,000
	1인용	3,000
	돌침대(돌포함)	12,000
	유아용침대	5,000
침대머리	모든규격	3,000
서랍장	5단이상(3단양수포함)	8,000
	5단미만	6,000
수납장	다용도수납장	4,000
싱크대(싱크대찬장포함)	대(1m이상)	6,000
	대(1m미만)	4,000
신발장	대(1.5m이상)	6,000
	소(1.5m미만)	3,000
문갑(거실장)	모든규격	6,000
장식장(차단스)	대	8,000

	중	6,000
	소	4,000
책장(책꽂이)	대(3단이상)	6,000
	소(3단이하)	5,000
협탁	모든규격	2,000
TV/오디오 받침대	모든규격	3,000
탁자	10인용이상	9,000
	10인용미만	5,000
받상	대(1.2m이상), 4인용이상	4,000
	대(1.2m이하), 4인용미만	3,000
피아노	대형(그랜드)	12,000
	일반(얼라이트)	11,000
오르간	모든규격	6,000
스탠드벽시계	일반	5,000
재봉틀	대	5,000
	소	3,000
빨래건조대, 행거(옷걸이)	모든규격	3,000
카펫트	대(길이2.5m이상)	12,000
	중(길이2.5m미만)	7,000
	소(길이1.5m미만)	5,000
액자	대(대각선 1m초과)	5,000
	중(대각선0.5~1.5m)	3,000
	소(대각선0.5m미만)	2,000
쌀통	일반	3,000
	다용도	4,000
병풍	모든규격	5,000
문짝	철재	5,000
	목재	4,000
문틀	대	5,000
	소	3,000
장판	5m이상	5,000
	5m미만	4,000
돛자리	모든규격	5,000
거울	전신거울, 대	5,000
	반신거울, 소	2,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자전거	대(일반(어른용))	5,000
	소(어린이용)	4,000
항아리(화분)	대(70cm초과)	5,000
	중(70cm미만)	4,000
	소(40cm미만)	3,000
오락기	일반	10,000
자동판매기	대(입식1m이상)	10,000
	소(1m미만)	6,000
세면기	모든규격	5,000
변기	모든규격	5,000
욕조	모든규격	10,000
방충망	대(문)	4,000
	소(창문)	3,000
아이스박스	대(길이1m이상)	5,000
	중(길이1m미만)	3,000
	소(길이50cm미만)	2,000
여행용가방	대(화물용)	5,000
	소(기내용)	3,000
바둑판	대(두꺼운판)	2,000
	소(얇은판)	1,000
유리	식탁및책상유리	3,000
유모차(보행기)	모든규격	3,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구문화회관사용료(제11조와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 사	
대 공 연 장		오 전	100,000	1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공연(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공연(행사)의 준비·진행·철거를 위하여 12:00~13:00, 17:00~18:00 사용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25퍼센트로 하고,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150퍼센트로 함. ○ 청소년문화의집에 한하여 청소년 이용 시 무료로 함. ○ 1회로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오 후	130,000	180,000	
		야 간	200,000	280,000	
소 공 연 장		오 전	30,000	45,000	
		오 후	45,000	65,000	
		야 간	70,000	90,000	
청소년문화의집		오 전	30,000	45,000	
		오 후	45,000	65,000	
		야 간	70,000	90,000	
회 의 장		1 회	60,000		
전 시 실		1 일	47,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09:00~22:00) ○ 면적 : 314㎡(≒ 95평)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부속설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공연	30,000			
무대시설	오케스트라		1회공연	20,000			
	회전무대		1회공연	20,000			
	수평이동무대		1회공연	20,000			
	승하강무대		1회공연	20,000			
	지하승하강리프트		1회공연	20,000			
	공바톤		1회1개	10,000			
	덧마루설치		1회	기본 66㎡ 이하	50,000		
				66㎡ 초과 추가 6.6㎡당	10,000		
	후로링매트설치		1회공연	100,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무대음향	마이크		1일 기본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특수 마이크	PIN	1일1개	30,000			
		W/L	1일1개	20,000			
	녹음	DAT	1시간	20,000			
		TAPE	1시간	10,000			
	M R (A R , B G M)		1시간	10,000			
	청소년문화의집 음향기기		1시간	20,000			
비디오프로젝트		1회공연	2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1시간	4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소공연장		1시간	20,000			
	청소년문화의집		1시간	20,000			
	특수효과기	핀สปอร์ต라이트		1회공연 1대	2kw 20,000		
					1kw 10,000		
		포그머신(액별도)		1회공연 1대	20,000		
		효과기(비, 구름)		1회공연 1대	10,000		
		드라이아이스(액별도)		1회공연 1대	10,000		
스트로바		1회공연 1대	10,000				
스캔라이트		1회공연 1대	15,000				
영사기	35m/m		1회상영	20,000			
	16m/m		1회상영	20,000			
냉난방	대공연장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 시세에 10퍼센트를 가산한 범위 내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냉방 : 6월~8월 ○ 난방 : 11월~3월 ※ 기온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	
	소공연장		1시간				
	전시실		1시간				
	회의장		1시간				
의상 및 대소도구			1회	취득가액의 5퍼센트		○ 단위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1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희생·공헌자”라 함은”을 ““희생·공헌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을 ““국가보훈대상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령”이라 함은”을 “법령”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훈복지”라 함은”을 ““보훈복지”란”으로 한다.

제8조제7호 중 “각종사업”을 “각종 사업”으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

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매월 3만원 이내
2. 위로금: 1회 20만원 이내
3. 건강수당: 반기별 5만원 이내

제12조 중 “이하”수급권자”라”를 “이하 ”수급권자”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토·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17조 중 “제출요구”를 “제출 요구”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 1통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수 급 권 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을 “법 제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제5조제7호 중 “차량”을 “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

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30퍼센트”를 “35퍼센트”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6m”을 “6미터”, “경우로서”를 “경우로써”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④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전용표시를 할 것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의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를 준용하고, 전용 표지는 별표 10과 같다.

-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제19조제1항제3호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영주차장의”를 “공영주차장이”로, “이상이”를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2조의3제3항 중 “구금고”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로 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보조금원금”을 “보조금 원금”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30분까지	최초30분이후 15분당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0,000원	7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비 고 -

1. 주차요금표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1-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간 : 09:00부터 19:00까지
 - 나. 야간 :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정한다.
4.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요금으로 징수한다.
5. 1구획은 국토교통부령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수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6. 주차요금의 특례
 - 가.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나.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다.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라. 노외주차장의 야간시간 이용요금은 50퍼센트 할인 금액으로 한다.

[별표 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제17조의2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 × 32cm

2. 색채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cm ~ 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